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세입예산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대비 94.4% 감액된 8억 9천 6백만원임.

- 제2차 재정분권에 따라 자치경찰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에는 기존 국고보조금 152억원을 시비로 전액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5,190,909	16,085,674	895,733	△14,295,176	△15,189,941	△94.1	△94.4
보 조 금	15,190,909	16,083,872	892,963	△14,297,946	△15,192,711	△94.1	△94.4
국고보조금 등	15,190,909	16,083,872	892,963	△14,297,946	△15,192,711	△94.1	△94.4
세 외 수 입	-	1,802	2,770	2,770	968	순증	53.7
경상적세외수입	-	11	70	70	59	순증	536.4
임시적세외수입	-	1,791	2,700	2,700	908	순증	50.7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5,190,909	16,085,674	895,733	△14,295,176	△15,189,941	△94.1	△94.4

2. 세출예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207억 6천 4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93억 8천 7백만원 대비 7.1% 증액된 수준이며, 2022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04억 1천 1백만원 대비 1.7%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계	19,387	20,411	20,764	1,377	353	7.1	1.7	
행정기관리	소계	19,387	20,411	20,764	1,377	353	7.1	1.7
	행정운영경비	295	170	287	△9	117	△3.1	68.8
	재무활동	-	-	-	-	-	-	-
	사업비	19,092	20,241	20,478	1,386	237	7.3	1.2

- 2023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계	19,387	20,411	20,764	1,377	353	7.1	1.7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 정착 기반마련	1,884	2,690	2,036	152	△654	8.1	△24.3
자치경찰 제도 정비	604	1,411	1,297	693	△114	114.7	△8.1
서울시자치경찰제 홍보	162	247	167	5	△80	3.1	△32.4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 관리 운영	79	79	0	△79	△79	종료	종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96	176	0	△196	△176	종료	종료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60	60	0	△60	△60	종료	종료
		서울시 치안 연계 사업 지원 강화	107	107	71	△36	△36	△33.6	△33.6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 및 사무 기구 운영	0	742	903	161	161	21.7	21.7
		주민참여 자치 경찰 치안정책	0	0	156	156	156	순증	순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1,280	1,280	739	△541	△541	△42.3	△42.3
		1인 여성가구 사회 안전망 체계구축	395	395	0	△395	△395	종료	종료
		한강공원 안전 확보 강화방안	22	22	0	△22	△22	종료	종료
		자율방범 연합회 지원	100	100	100	0	0	0	0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281	281	157	△124	△124	△44.1	△44.1
		협력단체 지원 (전환사업)	482	482	482	0	0	0	0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14,115	14,435	15,401	1,286	966	9.1	6.7
		시-경찰 협력 강화	66	156	52	△14	△104	△21.2	△66.7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 협력 체계 구축	66	66	52	△14	△14	△21.2	△21.2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 및 사무 기구 운영	0	90	0	0	△90	종료	종료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14,079	14,279	15,349	1,270	1,070	9.0	7.5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	100	100	0	△100	△100	종료	종료
		지하철 안전 확보	30	30	0	△30	△30	종료	종료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 경찰지원	280	280	0	△280	△280	종료	종료
		자치행정과 치안 행정이 연계된 시민 교통편의 제공	176	176	0	△176	△176	종료	종료
		지역맞춤형 자치 경찰 주민체감 사업	0	100	0	0	△100	종료	종료
		지역맞춤형 지방 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0	100	0	0	△100	종료	종료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전환사업)	107	107	108	1	1	0.9	0.9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435	435	913	478	478	119.8	119.8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전환사업)	46	46	32	△14	△14	△30.4	△30.4
		방범용 CCTV운영 (전환사업)	152	152	82	△70	△70	△46.0	△46.0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및 지원 (전환사업)	94	94	98	4	4	4.2	4.2
		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전환사업)	137	137	79	△58	△58	△42.3	△42.3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전환사업)	138	138	138	0	0	0	0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 근절 (전환사업)	70	70	85	15	15	21.4	21.4
		위기청소년 선도 (전환사업)	692	692	682	△10	△10	△1.4	△1.4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환사업)	336	336	335	△1	△1	△0.5	△0.5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가정폭력 등 통합 솔루션팀 운영 (전환사업)	62	62	32	△30	△30	△48.3	△48.3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64	64	32	△32	△32	△50.0	△50.0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	2	2	6	4	4	200.0	200.0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14	14	4	△10	△10	△71.4	△71.4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438	6,438	6,801	363	363	5.6	5.6
교통홍보활동 (전환사업)	299	299	225	△74	△74	△24.7	△24.7
교통장비, 운영비 (전환사업)	80	80	100	20	20	25.0	25.0
교통장비, 운영비 (자본보조) (전환사업)	48	48	12	△36	△36	△75.0	△75.0
기타 교통활동 지원 (전환사업)	391	391	526	135	135	34.5	34.5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1,221	1,221	1,768	547	547	44.8	44.8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508	1,508	1,593	85	85	5.6	5.6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운영(전환사업)	979	979	1,386	407	407	41.6	41.6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31	31	28	△3	△3	△9.7	△9.7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49	149	159	10	10	6.7	6.7
APO-소나무센터 상당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0	0	20	20	20	순증	순증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 센터 개선	0	0	105	105	105	순증	순증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3,063	3,115	3,041	△22	△74	△0.7	△2.4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127	2,179	2,080	△47	△99	△2.2	△4.5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15	2,007	2,007	△8	0	△0.4	0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112	112	73	△39	△39	△35.0	△35.0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 및 사무 기구 운영	0	60	0	0	△60	종료	종료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936	936	961	25	25	2.7	2.7
유실물업무 종합 관리 운영(전환사업)	56	56	60	4	4	7.1	7.1
지 하 철 경 찰 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지하철경찰대) (전환사업)	185	185	203	18	18	9.7	9.7
지 하 철 경 찰 대 등 운영 및 특 수지역 경찰활동 (한강경찰대) (전환사업)	426	426	232	△194	△194	△45.6	△45.6
관광경찰대 운영 (전환사업)	269	269	166	△103	△103	△38.2	△38.2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0	0	300	300	300	순증	순증
행정운영경비	295	170	286	△9	116	△3.1	68.2
행정운영경비	295	170	286	△9	116	△3.1	68.2
기본경비	295	170	286	△9	116	△3.1	68.2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160억8천5백만원) 대비 94.4% 감액된 8억 9천 6백만원이며, 이는 제2차 재정분권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으로써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의 전액 감액에 따른 것이고, 세외수입(270만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8억9천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5,190,909	16,085,674	895,733	△14,295,176	△15,189,941	△94.1	△94.4
보조금	15,190,909	16,083,872	892,963	△14,297,946	△15,192,711	△94.1	△94.4
국고보조금 등	15,190,909	16,083,872	892,963	△14,297,946	△15,192,711	△94.1	△94.4
국고보조금	15,190,909	16,083,872	-	전액감액	전액감액	전액감액	전액감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892,963	892,963	892,963	순증	순증
세외수입	-	1,802	2,770	2,770	968	순증	53.7
경상적세외수입	-	11	70	70	59	순증	536.4
이자수입	-	11	70	70	59	순증	536.4
임시세외수입	-	1,791	2,700	2,700	908	순증	50.7
보조금 반환수입	-	1,791	2,700	2,700	908	순증	50.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 대비 증 감	증감률 (%)	산출기초
계	16,086	896	△15,190	△94.4	
세 외 수 입	2	3	1	50.0	
임시적세외수입	2	3	1	50.0	
보조금반환수입	2	3	1	50.0	· 자율방범연합회 보조금 반환 평균액 1,800천원(21년도 집행잔액 참고) · 교통활동 단체 지원 보조금 반환액 176,110천원 * 0.5%(만원 단위 반올림)
보 조 금	16,084	893	△15,191	△94.4	
국 고 보 조 금 등	16,084	893	△15,191	△94.4	
국 고 보 조 금	16,084	-	전액 감액	전액 감액	·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30개 자치경찰사업이 전환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미편성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보 조 금	-	893	순증	순증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보조를 위한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가. 세외수입

-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7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수입(270만원)’ 등 총 277만원으로 전년(97만원) 대비 53.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 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	1,802	2,770	2,770	968	순증	53.7
경상적세외수입	-	11	70	70	59	순증	536.4
이자수입	-	11	70	70	59	순증	536.4
임시세외수입	-	1,791	2,700	2,700	908	순증	50.7
보조금 반환수입	-	1,791	2,700	2,700	908	순증	50.7

- ‘보조금 반환수입’은 지역 범죄예방 활동을 보조하는 자율방범연합회 및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인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전년(179만원) 대비 50.7% 증액한 2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3년 추계액 : 2,700천원
- 산출내역 : 900,000원(교통) + 1,800,000원(자율방범)
 -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보조금 반납 : 176,110천원 × 0.5% = 880천원
 - * 해당 세출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 176백만원) 집행을 99.5% 예상에 따른 집행잔액 산출 및 만원단위 이하 반올림
 -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보조금 반납 : 1,800,000원
 - * '21년 해당예산 집행잔액(1,790,550원) 기준

나.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15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8억9천3백만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전년(160억8천4백만원) 대비 94.4% 감액된 8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국고보조금 등	15,190,909	16,083,872	892,963	△4,297,946	△5,192,711	△94.1	△94.4
국고보조금	15,190,909	16,083,872	-	전액감액	전액감액	전액감액	전액감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	-	892,963	892,963	892,963	순증	순증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은 2년간(2022년-2023년) 한시적 지원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자치경찰에 대해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¹⁾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이 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으로 부족해 보임.
-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의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고보조금 교부·가내시 통보 현황 〉

(단위 : 천원)

교부부처	세부사업명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가내시액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	892,963	892,963	증감 없음
행정안전부	시도 자치경찰위원 및 사무기구 지원	892,963	892,963	증감 없음

- 또한, 2022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1차 교부(6억2천5백만원)는 2022년 6월에 통보·교부되었고, 2차 교부(2억6천8백만원)는 9월에 통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였음.

1) 내일신문, “[‘서울경찰’ 1년 빛과 그림자, ② 인사권도 예산도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 우리동네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 2022년 8월 2일자 참조; 중앙일보, “자치경찰 ‘아리송한 1년’ ... 같은 건물 같은 업무, 수당은 다르다?“, 2022년 9월 2일자 참조 등.

- 자치경찰위원회는 적극적인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조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2022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1차) 교부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208, 2022.6.22. 참조.

2. 시·도별 국고조보금 교부 내역

(단위 : 원)

시·도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1차)	교부잔액	비고
계	13,000,000,000	9,100,000,000	3,900,000,000	
서울특별시	892,963,000	625,074,100	267,888,900	

※ 행정안전부, 2022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2차) 교부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지원과-158, 2022.9.15. 참조.

2. 시도별 국고조보금 교부 내역

(단위 : 원)

시·도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1차)	금회교부액 (2차)	교부잔액	비고
계	13,000,000,000	9,100,000,000	3,900,000,000	0	
서울특별시	892,963,000	625,074,100	267,888,900	0	

2. 세출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207억6천4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204억 7천 8백만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202억4천1백만원) 대비 1.2%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19,387	20,411	20,764	1,377	353	7.1	1.7	
행정관리	소 계	19,387	20,411	20,764	1,377	353	7.1	1.7
	행정운영경비	295	170	287	△9	117	△3.1	68.8
	재 무 활 동	-	-	-	-	-	-	-
	사 업 비	19,092	20,241	20,478	1,386	237	7.3	1.2

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예산 중 2023년 신규사업은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 정책 제1호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 정책” 사업 1억 5천 6백만원,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 사업 2천만원,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사업 1억 5백만원,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3억원 등 4개 사업에 5억 8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신규사업 현황 : 4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편성 사유
1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155,700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제1호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위한 비용 반영
2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19,500	시-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동 구축을 통해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연번	사업명	2023년도	편성 사유
3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105,400	교통민원 3종(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신청 장비 설치를 통해 낮 시간 뿐만 아니라 새벽, 야간시간대 방문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도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대시민 만족도 제고
4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300,000	내용연수 13년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소형선 중 1정을 우선 교체하여 근무자와 시민의 안전 확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6천2백만원, 211.5%증액)”,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9억1천3백만원, 110.1%증액)”,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17억 6천8백만원, 44.8%증액)”,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13억8천6백만원, 41.5%증액)” 등 8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 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증액 사업 현황(20%) : 8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2023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742,000	902,963	160,963	20.3%	국비가 1월부터 교부됨에 따라 청사 유지관리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기간 증가(6개월 → 12개월)
2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434,700	913,360	478,660	110.1%	'22년 시비(345백만원) 사업과 통합 및 사업지역 확대(3→4개소)
3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69,900	85,440	15,540	22.2%	점검 대상시설 증가 (7,685→ 8,544개소)
4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전환사업)	2,000	6,230	4,230	211.5%	가정폭력·학대업무 담당자 대상 힐링프로그램 개최
5	교통장비, 운영비 (전환사업)	80,170	100,083	19,913	24.8%	교통전담기동대 안전조끼 및 LED 안전조끼 신규 구입
6	기타 교통활동 지원 (전환사업)	391,376	525,974	134,598	34.4%	교통관리에 필요한 통제장비 신규 구입

7	무인단속장비 구매 (전환사업)	1,221,000	1,768,000	547,000	44.8%	내용연한 초과장비 구매(58대)
8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979,213	1,385,964	406,751	41.5%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20~'21년 983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전환사업)(1천2백만원, 75.7%감액)”,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전환사업)(430만원, 69%감액)”,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3천2백만원, 50.8%감액)”,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3천2백만원, 49.3%감액)” 등 총 14건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 주요감액 사업 현황(20%) : 14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3년도	2023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서울시 치안연계사업 지원 강화	107,200	71,700	△35,500	△33.1%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위한 합동 순찰 등은 '주민참여 자치 경찰 치안정책' 사업 신설에 따라 예산 조정
2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280,700	156,928	△123,772	△44.1%	일상적인 회의 진행물품(현 수막, 자료 인쇄 등) 등 예산절감
3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체계 구축	65,800	51,900	△13,900	△21.1%	연간 회의 횟수 조정으로 수당 및 회의자료 제작비용 일부 감액
4	불법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전환사업)	46,100	31,970	△14,130	△30.7%	장비 소요량 수요조사 후 필요 량에 맞춰 산정하여 예산 절감
5	방법용 CCTV 운영 (전환사업)	152,400	82,091	△70,309	△46.1%	경찰청 설치 CCTV 일부 자 치구 이전으로 관리비용 감액
6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전환사업)	137,000	78,915	△58,085	△42.4%	회의 진행물품 감액
7	가정폭력 등 통합 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62,400	31,620	△30,780	△49.3%	통합솔루션회의 개최 횟수 조정으로 일부 감액

8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전환사업)	64,300	31,620	△32,680	△50.8%	홍보물품 제작·구매비용 일부 감액(비교건적가 적용)
9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 (전환사업)	14,000	4,340	△9,660	△69.0%	각 경찰서별 보급대수(1대)조정
10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98,676	224,670	△74,006	△24.8%	유관기관 홍보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감액
11	교통장비, 운영비 (자본보조)(전환사업)	48,170	11,726	△36,444	△75.7%	'22년 구매 단가 수준 반영 등에 의한 감액
12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111,800	72,700	△39,100	△35.0%	자치경찰 및 인권 교육콘텐츠 개발·구축비 등 절감
13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한강경찰대)(전환사업)	425,900	231,540	△194,360	△45.6%	'22년 노후순찰정 엔진교체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14	관광경찰대 운영 (전환사업)	269,140	166,410	△102,730	△38.2%	경찰관 외국어교육비 및 노후 시설물 교체비용 감액

나.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보장 필요

- 중앙정부는 2021년 7월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여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8월 11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였고, 그 중 하나로 자치경찰사무 예산도 2022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지방 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2단계 재정분권 당·정·청 합의안은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2023년 2개년도에 걸쳐 총 2조 2,500억원 규모의 41개 내역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며, 경찰청 소관 자치경찰사무 관련 1,133억원 규모의 예산 역시 2023년 지방이양 대상으로 계획되었음.²⁾ 또한,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 자치분권 한걸음 더, 2021년 11월 11일자 참조.

〈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30개 자치경찰사업내역 〉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7	30	
경찰청	일반회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치안인프라강화 -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 방범용 CCTV운영 -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 기타 범죄예방활동지원 - 관광경찰대 운영 	9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원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 위기청소년 선도 - 학교폭력예방활동 	6
		여성대상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 가정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 	4
		아동안전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1
		교통안전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홍보활동 - 협력단체 지원 	2
		교통안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장비, 운영비 -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 기타 교통활동 지원 	3
		교통과학 장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단속장비 구매 - 무인단속장비 운영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 음주단속장비 구매 - 음주단속장비 운영 	5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023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2023년 기준액은 1,133억원으로 2022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1,299억원 대비하여 166억원을 감액하여 사전통지하였고,

-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도 2022년 국고보조금(152억원) 보다 18억원 감액한 134억원을 통보하였으나, 2023년도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편성예산은 165억원으로 의무편성 규모보다 31억원을 시(市)가 자체부담 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자치경찰사무 예산 의무 편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국고보조금	2023년 보존 통보	증 감
금 액	15,191	13,378	△1,969

〈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6개 분야 자치경찰사업 2023년 예산(안) 〉

분 야	'23년 예산(안)	'22년 예산(안)	'21년 배정	증감 ('23-'21)
합 계(단위:백만원)	16,420	15,191	13,378	3,042
범죄예방 생활질서 유지	1,953	1,956	2,380	▲427
아동청소년 보호	1,332	1,609	1,709	▲377
아동안전지킴이	6,856	6,438	5,385	1,471
교통안전 교육홍보	707	781	787	▲80
교통안전 활동	638	520	492	146
교통장비 관리	4,934	3,887	2,625	2,309

- 또한, 불합리한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2021년 기준으로 편성된 134억원)이 2026년까지 적용되고, 행정안전부 지침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 제188호)」에 따르면, 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후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임.
 -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적극적·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 나아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사무 관련 교통 범칙금 지방 이양, 소방특별회계와 같은 자치경찰특별회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이고, 현재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재정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있음. 따라서, 자치경찰도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 없이 균등한 지역 치안 행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다. 법령에 근거 없는 서울경찰청 소관 위원회 등 예산 편성 규정 명확화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위원회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제2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경찰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등 4개를 두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상 위원회와 해당 사업의 정책 자문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으로 서울경찰청의 훈령·예규 등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등 총 17개 있으며,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8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위원회 등 수당 현황 〉

구분	사업명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 시민정책자문단 등 운영비 15,000,000원 = 15,000천원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자치경찰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 66,850,000원 = 66,850천원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 반려견 순찰대 실무협의회 등 운영비 실무협의회 수당 100,000원*2명*2회 = 400천원
		-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 심사위원 수당 200,000원*3명*20개 자치구 = 12,000천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생활안전협의회 회의 10,000원*200개 단체*4회 = 8,000천원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 실무협의회 등 수당 지급 200,000원*4명*18회 = 14,400천원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자문료 150,000원*12명*31개서 = 55,800천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비 = 3,000천원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수당 100,000원*2,289명 = 228,900천원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간사수당 50,000원*2명*12월 = 1,200천원
		▷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수당 150,000원*2명*31개서*12회 = 111,600천원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 가정폭력 통합사례회의 참여 전문위원 참여비 50,000원*31개서*3명*6개월 = 27,900천원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운영 서울청150,000원*5명*12회+31개서*150,000원*5명*4회 = 102,000천원
- 무인단속장비 설치 심의회 운영 150,000원*연1회*3명 = 450천원		

구분	사업명	2023년 예산(안)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 자문회의 200,000원*5명*1회	= 1,000천원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 인권 관련 자문회의 운영 150,000원*10명*5회	= 7,500천원

- 행정안전부 훈령(『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을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 서울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 등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등의 수당 예산의 경우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임에도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로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마련을 통해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은 법도 아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이 행사하고 있으나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편성하고 서울경찰청에 예산을 재배정함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9조(위임규정) ① 운전면허시험·정기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통고처분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 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도 시·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더욱이, 기존에는 도로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나 교통안전 관리는 경찰청 사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교통안전관리 사무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교통안전심의 위원회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자치경찰위원회에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조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 동 사업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2년간(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8억9천3백만원)과 시비(1천만원) 등 전년(7억4천2백만원) 대비 21.6% 증액된 9억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742,000	902,963	160,963	2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14,819	22,249	7,430	50
사무관리비	0	712,360	842,114	129,754	18
공공운영비	0	4,000	7,000	3,000	7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10,000	10,000	100
특정업무경비	0	10,821	21,600	10,779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14,819,000 = 14,819천원	○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10,766원*14주*4회*3명*12개월 = 21,705천원 ○ 초단시간 근로자 보험료 21,704,256원*2.503% = 544천원
	증감사유	
	○ 서울시 부서 초단시간 근로자 3명 보수 및 보험료 기간 증가(6개월 → 12개월)	
사무관리비	○ 청사 임차료 354,000,000원 = 354,000천원	○ 청사 임차료 530,792,000원 = 530,792천원
	○ 기본경비 45,760,000원 = 45,760천원	○ 시민정책자문단 등 운영비 15,000,000원 = 15,000천원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75,000,000원 = 75,000천원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자치경찰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 15,000,000원 = 15,000천원	○ 자치경찰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 66,850,000원 = 66,850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 자치경찰총괄과 및 위원장·사무국장실 운영비용 9,472,000원 = 9,472천원
		○ 주민참여 치안정책 만족도 및 신규 정책 수요조사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증감사유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청사 임차 비용 상승 및 기간 증가(6개월 → 12개월) ○ 자치경찰위원회 및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및 기간 증가(6개월 → 12개월)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주민 만족도 및 신규 치안정책 수요 조사	
공공운영비	○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비용 4,000,000원 = 4,000천원	○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비용 7,000,000원 = 7,000천원
	증감사유	
	○ 청사 유지관리 기간 및 차량 운행기간 증가(6개월 → 12개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유관기관(시도협, 국가경찰위원회 등)과의 회의 증가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기 회장(임기 : 2022.7.1.~2023.6.30.)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상호교류의 구심점 역할과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개발 선도	
특정업무경비	○ 자치경찰위원회 일반직 대민활동비 10,821,000원 = 10,821천원	○ 자치경찰위원회 일반직 대민활동비 50,000원*36명*12개월 = 21,600천원
	증감사유	
	○ 서울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 기간 증가(6개월 → 12개월)	

- 이는 관련 법령(「경찰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제26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제17조 및 제31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서울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인사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공정인사 구현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것임.

-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승진자 명단만 통보받아 구체적인 승진사유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단순히 결재(시·도지사) 및 의결(자치경찰위원회)만 하는 형태이며,
 -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인사시스템(e-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재 개인별 소속과 사무분장만을 토대로 임용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 정보 접근 권한은 파견 나온 경찰공무원에게도 주지 않고 있어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 임용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임.³⁾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자치경찰 1주년 백서 :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2022년 6월, 253면 참조.

※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현재 자치경찰제는 누가 봐도 기형적”이라며, “전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사할 때만 되면 1장짜리 결재 문서가 오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중에 선택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결정된 것을 사인해달라고 보내오는 형국”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자치경찰을 지휘·통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⁴⁾

-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별도 승진 인원 배정 및 시·도 또는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임용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자치경찰 지휘·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고 발생후 1시간도 더 넘은 시간 경찰청이 아닌 시(市)로부터 통보받아 사고에 대해 인지하는 등 긴급 사안이 생겼을 때 서울경찰청과 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즉시 보고받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임.

마.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신규)

- 동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치안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대시민 치안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제1호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위하여 1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4) 뉴스1, 오세훈 “ 현 자치경찰제는 기형적, 대수술해야”, 2022년 11월 7일자 참조.
(<https://www.news1.kr/articles/4856955>, 최종방문 2022.11.10.)

〈 편성예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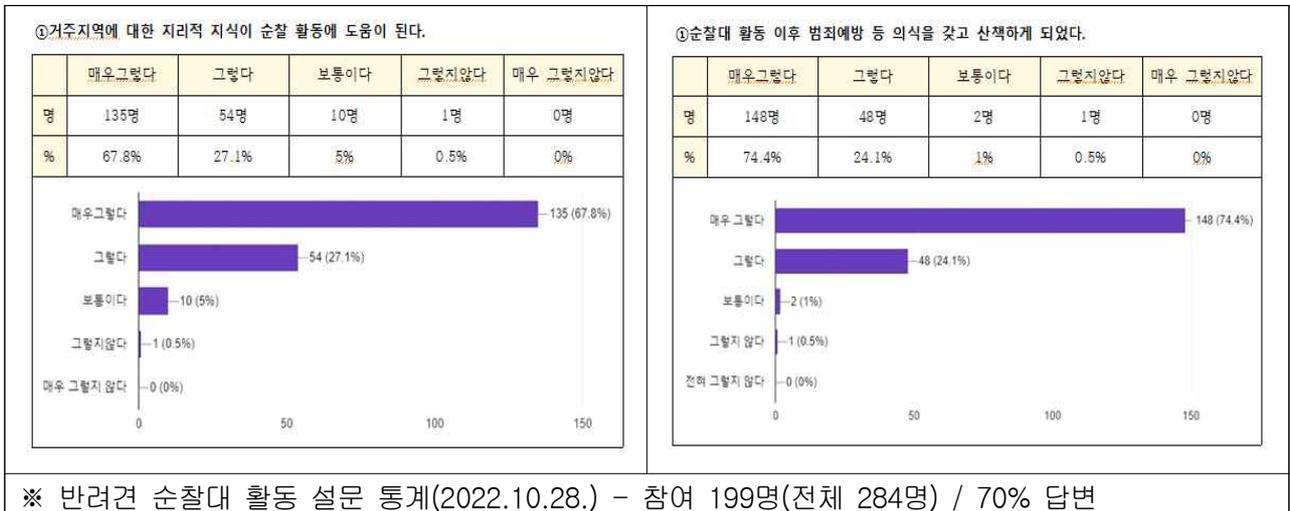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155,700	155,700	100
사무관리비	0	0	155,700	155,700	100

○ 동 사업은 최근 펫팸족(Pet+Family)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일상적 산책 활동에 방법순찰의 임무를 접목하여 주민 참여 치안 및 지역의 방범력 향상 기대를 목적으로 2022년 5월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범 운영 중 언론과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에 따라 7월 말부터 8개 자치구(송파, 서초, 강서, 금천, 마포, 서대문, 동대문, 성동)에서도 확대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14개 자치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 지역 내 선제적 순찰대 방법 활동에 따른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효과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음.

※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설문 통계(2022년 10월 28일)에 따르면, 활동을 할수록 우리동네 위험 등 관련 문제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매우 그렇다(30.7%)와 그렇다(53.8%)가 84.5%, 순찰대 활동 이후 범죄예방 등 의식을 갖고 산책하게 되었다는 의견으로 매우 그렇다(74.4%)와 그렇다(24.1%)가 98.5%로 순찰대 활동과 주민 참여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 추진 계획, '22.11.4. 부분 참조.

1 확대 운영 개요

자치구 선정

-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추진계획 공유 및 25개 자치구 및 경찰서 대상 운영 희망 신청접수를 통해 22년 운영지 포함 6개 자치구 선정 (총 14개 자치구 운영)

2 순찰대 모집 및 선발

모집 : 자치구별 약 30명 선발

선발 : 1차 서류심사, 2차 실습 평가

선발 절차 강화

- 서류심사 단계부터 지원동기 등 세심한 검토(필요시 면접)와 심사의 합격 기준 향상을 통해 순찰대 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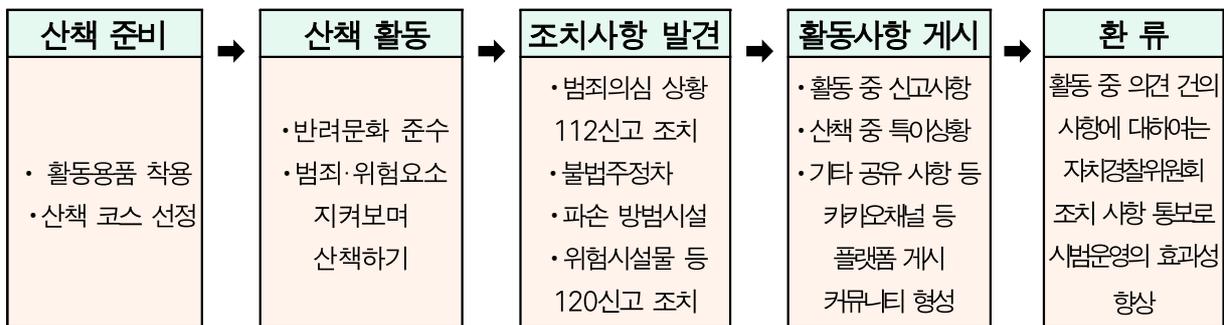
4 순찰대 운영

순찰대 활동 개요

- 활동 내용 :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 중심의 활동 전개

-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안전 위해 요소 발견을 중심으로 한 활동
- 순찰대 활동의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간 실무 협의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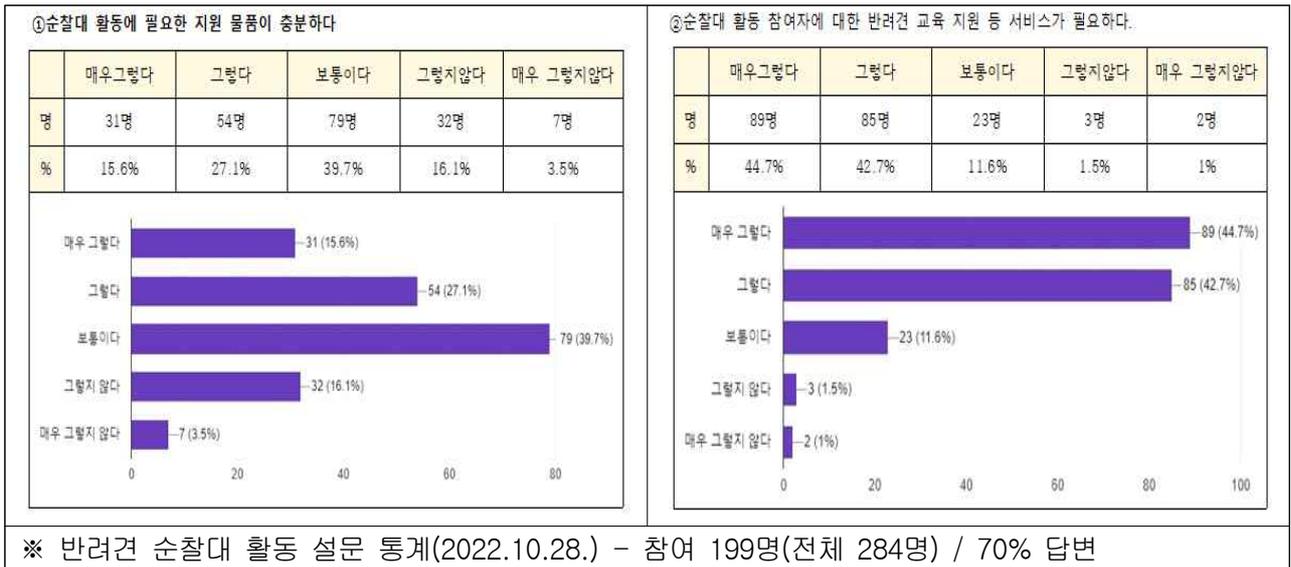
- 활동 절차



- 활동 관리 : 통합적 플랫폼 형성을 통해 자율적 활동 유도

- 순찰대 참여자 간 커뮤니티 마련(통합 어플리케이션 등)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의 장 마련 및 참여자 주도 자율적 활동 유도

- 다만,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설문 통계(2022년 10월 28일)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 활동 물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9.3%, 순찰대 활동 참여자에 대한 반려견 교육 지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7.4%로 지속적인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과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 계획’을 보면 자치구별 약 30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활동 구역이 넓음에도 30명으로 순찰대 운영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 등 실행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반려견 순찰대 규모 확대 필요성 및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 안정적 활동 기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의 역량강화 및 활동장비 지원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 방범순찰 활동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의 각 동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자치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일반현황 〉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 설립년도 : 2009. 2.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11.3.21.)
- 조 직 : 자율방범연합회(시) 1개, 연합대(자치구) 30개, 방범대(동) 422개
- 회원현황 : 9,681명
- 주요활동 : 지역방범 봉사활동, 기타 경찰업무 협조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00,000	100,000	100,000	0	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100,000	0	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 100,000천원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 100,000천원
	- 범죄예방 근절 등 캠페인 10,000,000원 = 10,000천원	- 범죄예방 근절 등 캠페인 59,700,000원*1식 = 59,700천원
	- 청년대원 합동 방법 순찰 6,796,000원 = 6,796천원	- 청년대원 합동 방법 순찰 19,840,000원*1식 = 19,840천원
	- 방법대 순찰복 지원 83,204,000원 = 83,204천원	- 방법대 순찰복 지원 20,460,000원*1식 = 20,460천원
증감사유		
○전년 동일		

○ 자율방범대 활동 예산 지원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와 안심마을보안관의 차이는 자율방범대는 자발적인 시민참여이고, 안심마을보안관은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자율방범대의 박탈감과 자괴감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시가 2021년 시범사업으로 안전취약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 및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안심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2022년에는 활동구역 15개 선정하여 63명의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을 위한 최종예산(1차 추경 예산 포함)은 18억원이고, 2023년에는 활동구역을 15개에서 20개, 보안관을 63명에서 84명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보안관 인건비로 19억3천5백만원, 보안관 초소운영, 교육, 장비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예산안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844,182천원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2,952,042천원
	- 보안관인건비 2,391,000원*63명*4개월 = 602,532천원	- 보안관인건비 2,304,000원*84명*10개월 = 1,935,360천원
	- 보안관 초소운영, 교육, 장비 등 241,650,000 = 241,650천원	- 보안관 초소운영, 교육, 장비 등 1,016,682,000 = 1,935,360천원
	○ 1인가구 안전대책 홍보 = 100,000천원	○ 1인가구 안전대책 확산 추진 = 100,000천원
증감사유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확대(보안관 63→84명 배치 / 활동구역 15→20개소 확대에 따른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000원 = 7,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000원 = 9,000천원
	증감사유	

※ 2023년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사업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885면 재인용

사.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은 범죄 취약지 및 일상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사업으로 전년(4억3천5백만원) 대비 110.1% 증가한 9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34,700	434,700	913,360	478,660	110
사무관리비	434,700	434,700	313,360	△121,340	△28
시설비	0	0	600,000	600,000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 434,700천원 - 여성안심귀갓길안심구역 운영 1,300,000원*219개소+50,000,000원* 3개소 = 434,7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비 = 3,000천원 ○ 사업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 = 30,000천원 ○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 = 280,360천원
	증감사유	
	○ 사업 지속·보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효과성 분석 실시 ○ 범죄예방 관리구역 유지보수 물품은 수요 감소에 맞추어 일부 감액	
시설비		○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150,000,000원*4개소 = 600,000천원 - 1개서당 산출기초 범죄예방인프라 개발 : 인건비+제경비 +설계비+감리비 = 34,803천원 시공 : 재료비+노무비 = 100,000천원 부가가치세 = 13,481천원
	증감사유	
	○ 사업지역 확대로 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동 사업은 범죄 취약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원리를 적용한 환경 개선을 통해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지역주민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실제 범죄 감소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⁵⁾

※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는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를 말함.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 2019년 강동구 천호 노인 밀집 거주지역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결과, 효과성 평가에서 천호동은 폭력 범죄 40% 감소하는 등 사업지의 주요 범죄 감소 폭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았다고 하고 있음(연합뉴스,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해 범죄 대폭 감소”, 2021년 4월 27일자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156100004?input=1195m>, 최종방문 2022.11.14.).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 범죄예방인프라 생활안심디자인 사례 〉



비상벨



반사경



거점 공간



로고젝터

- 다만, 동 사업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3억 9천 5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시킬 예정인바, 자치경찰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명시이월 조서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계	395,000	293,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선정을 당초 4월 7일 완료했으나, 노원구가 사업을 포기하여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일이 한 달 가량 지연 ○ 이에 따라, 당초 4월예정이던 사업 설명회를 5월 17일 시행하는 등 기본 설계를 위한 절차가 차례로 지연되었으며, ○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주민설명회가 사업대상지(관악) 8월 수해복구로 지연되어 실시설계 등 필요절차를 9월 말 진행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 추진
	사무관리비	50,000	-	
	시설비	345,000	293,700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공을 하였다고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지속적인 방법 활동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아.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 동 사업은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운영으로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지문 등록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1억3천8백만원) 대비 0.1% 증액된 1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38,349	138,349	138,398	49	1
사무관리비	133,500	133,500	133,500	133,500	1
자산및물품취득비	4,849	4,849	4,898	49	1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체계 운영 = 133,500천원	○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체계 운영 = 133,500천원
	- 지문사전등록장비 등 임대 6,050,000원*1식 = 6,050천원	- 노트북 임대료 550,000원*11대 = 6,050천원
	- 현장방문 사전등록용역 105,830,000원*1식 = 105,830천원	- 현장등록 및 검수요원 용역비 105,830,000원*1식 = 105,830천원
	- 모바일 지문사전등록 홍보 21,620,000원*1식 = 21,620천원	- 지문사전등록 홍보 21,620,000원*1식 = 21,620천원
	증감사유	
	○ 전년 동일	
자산및물품취득비	○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운영 = 4,849천원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장비구입 = 4,898천원
	- 지문 등 사전등록 장비구입 4,849,000원*1식 = 4,849천원	- 스캐너 및 PC카메라 구매 138,000원(지문스캐너)*31대(경찰서)+ 20,000원(PC카메라)*31대(경찰서 및 여분) = 4,898천원
	증감사유	
	○ 물가상승분 반영	

- 다만, 동 사업은 현장등록 및 검수요원 용역비 1억 6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되어 있음에도 ‘사무관리비’로 용역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201 일반운영비	<p>01. 사무관리비</p> <p>1. 일반수용비</p> <p>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p>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p> <p>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p> <p>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p> <p>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p> <p>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p> <p>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및 광고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광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p>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p>자. 기 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	---	--

	<p>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p> <p>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적일 때에는 포함)</p> <p>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p> <p>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p> <p>※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지방세정책과-1641, 09.7.12) 참고</p>
--	---

-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 예산의 성질별 분류 체계에 맞는 적정 예산과목 편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 동 사업은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을 청소년 전문가로 육성하여 선제적·능동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및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청소년 보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범죄예방교육 및 회의,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및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3억3천5백만원) 대비 0.3% 감액된 3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는 자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탄생하였음('13년 2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35,511	335,511	334,490	△1,021	△1
사무관리비	327,100	327,100	321,890	△5,210	△1
자산및물품취득비	8,411	8,411	12,600	4,189	5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학교폭력 예방활동 = 327,100천원	○ 학교폭력 예방활동 = 321,890천원
	- 범죄예방교실 예방교육 및 간담회 263,100,000원*1식 = 263,100천원	- 범죄예방교실 및 회의 = 241,570천원
	-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5,500,000원*1식 = 5,500천원	▷ (서울청)예방교육·홍보콘텐츠 등 자료제작 = 8,212천원
	-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 58,500,000원*1식 = 58,500천원	· 매뉴얼책자 12,000원*136명*1회 = 1,632천원
		· 포스터 235원*28,000부 = 6,580천원
		▷ (경찰서) 리플릿 등 홍보물품 제작 233,358,000원*1식 = 233,358천원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1,840,000원*9개소 = 16,560천원	
	- 명예경찰소년소녀단,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 63,760천원 ▶ 명예경찰소년소녀단 = 43,200천원 · 유니폼구입비 50,000원*600명 = 30,000천원 · 체험활동입장료 3,000원*600명*4회 = 7,200천원 · 발대식, 교육비 10,000원*600명 = 6,000천원 ▶ 정책자문단 교육,회의비 10,000원*514명*4회 = 20,560천원
	증감사유	
	○ 범죄예방교실 매뉴얼, 홍보물품 제작 비용 비교견적가 적용 예산절감	
자산및물품취득비	○ 학교폭력예방활동(자본보조) 8,411,000원 = 8,411천원	○ 학교폭력예방활동(자본보조) = 12,600천원 - 교육기자재 구입 등 장비교체 1,400,000원*9개소 = 12,600천원
	증감사유	
	○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환경개선 및 장비교체 필요	

○ 최근 3년간 서울시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702건에서 2021년 1,744건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9월까지 1,427건이며, 특히, 성폭력은 2020년 343건에서 2021년 41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56면 재인용.

- 최근 3년간 서울시 학교폭력 현황 (※ 서울경찰청 통계)

구분	총계	유형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22. 9월	1,427	687	105	358	277
2021년	1,774	893	160	411	310
2020년	1,702	889	175	343	295
2019년	2,245	1,223	263	461	298

*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정통망법위반 등

※ 22.1~9월 통계는 미확정 통계로 추후 공표되는 확정 통계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합한 학교폭력·청소년범죄 등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감소 기여, 청소년 범죄 관련 학교전담 경찰관 전문능력 향상, 학교폭력 예방 경찰활동에 실수요자인 청소년을 참여시켜 학생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내 학교는 1,407개에 달하는데, 반해 서울경찰청 내 학교전담경찰관(SPO)은 133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6개로 10개가 넘고, 담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찰관 1인당 6,132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며, 그마저도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어 담당 학교 수가 20개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며,

※ 2022년 서울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은 총 1,376개이고, 학생 수는 815,549명 이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간편한 서울교육통계』, 2022년 10월 참조), 서울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 133명으로 1인당 6,132명의 학생을 담당하게 되는 것임.

※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54-355면 재인용.

- 서울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 현황

구 분	정원(명)	현원(명)	학교 수(개)	1인 담당학교 수 (현원기준) (개)	정원대비 총원율(%)
서울	133	133	1,407	10.6	100

○ 서울시 31개 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현황

자치구	경찰서	정원(명)	현원(명)	1인당 담당 학교수
계		133	133	10.6
중구	중부서	3	3	8
	남대문서	1	2	5.5
종로구	종로서	3	3	9

	혜 화서	1	1	16
서대문구	서대문서	3	3	14.3
용산구	용산서	3	2	17
성북구	성북서	3	2	20.5
	종암서	3	3	7
동대문구	동대문서	6	4	12.3
마포구	마포서	4	5	9.6
영등포구	영등포서	5	6	7.7
성동구	성동서	4	3	14.3
동작구	동작서	4	4	11.8
광진구	광진서	4	5	9.2
은평구	서부서	2	3	8
	은평서	5	3	15
강북구	강북서	5	5	7.6
금천구	금천서	3	4	9.3
종랑구	종랑서	4	3	17.3
강남구	강남서	2	2	11
	수서서	6	5	12.4
관악구	관악서	5	6	10
강서구	강서서	8	6	14
강동구	강동서	6	7	9.3
구로구	구로서	5	7	8.7
서초구	서초서	4	6	6.2
	방배서	2	2	10
양천구	양천서	6	6	10.8
송파구	송파서	8	8	11.5
노원구	노원서	10	9	11
도봉구	도봉서	5	5	9.6

- “최근 온라인 범죄, 성폭력, 마약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체자로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책임지는 과도한 학교 및 학생 수 문제 개선을 위한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한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차.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및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 동 사업은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 및 지역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지원체계 구축 협의 등을 통한 실질적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6천2백만원) 대비 49% 감액된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사업은 성폭력피해 조기발견을 위한 장애인시설 방문 및 유관기관전문가와 협업 회의 실시 등 성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홍보 전개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6천4백만원) 대비 49.4% 감액된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팀 운영(전환사업)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 62,400천원	○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 운영 = 31,620천원
	- 피해자 보호업무 조력비 54,950,000원*1식 = 54,950천원	- 통합사례회의 참여 전문위원 참여비 50,000원*31개서*3명*6개월 = 27,900천원
	- 사례회의 운영비 7,450,000원*1식 = 7,450천원	- 사례회의 운영비 20,000원*31개서*6회 = 3,720천원
	증감사유	
	○ 통합솔루션회의 개최 횟수 조정	

<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 64,300천원	○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 31,620천원
	- 예방 방문홍보 조력비 50,900,000원*1식 = 50,900천원	- 성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구매 100,000원*268개소 = 26,800천원
	- 민관 협력활동 간담회 13,400,000원*1식 = 13,400천원	- 민·관 협업 회의 4,820,000원*1식 = 4,820천원
	증감사유	
	○ 홍보물품 제작·구매비용 일부 감액	

○ 먼저,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은 전문가와 경찰이 가정폭력 사례의 문제점 진단과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 최근 3년간 ‘112치안종합상황실’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40,343건, 2021년 38,826건, 2022년 9월까지 30,730건이고, 가정폭력에 따른 검거 인원도 2017년 7,952명에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12치안종합상황실 가정폭력 신고 건수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까지
신고건수	40,343건	38,826건	30,730건

※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07-109면 참조.

〈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 인원 〉

연 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거 인원	49,340명	7,952명	7,374명	9,693명	8,771명	9,469명

※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58면 참조.

- 또한,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2,835건, 2021년 1,943건, 2022년 10월까지 1,574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최근 가정폭력 증가세에 따라 통합솔루션회의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통합솔루션 회의 개최실적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까지
회의 개최실적	2,835건	1,943건	1,574건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2.11.9.) 참조.

- 그럼에도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통합솔루션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여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예산을 전년(6천2백만원) 대비 49.4% 감액하여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솔루션 운영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은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장애인 시설 방문·점검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 장애인의 경우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기 쉽지 않는 등 성폭력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성폭력의 점검 및 예방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짐.
 - 서울복지포털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시설 현황은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 가정은 217개이고, 그 외에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이 417개로 서울시에 총 624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성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구매’는 268개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과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장애인시설 현황 〉

합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복지관
624개	43개	174개	54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체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9개	145개	13개	136개

※ 서울복지포털-장애인복지-장애인 복지시설 검색(<http://wis.seoul.go.kr>), 최종방문 2022.11.14.

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 동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경찰, 교사 등 은퇴한 전문 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실종, 학대 등)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등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64억3천8백만원) 대비 5.6%(3억6천3백만원) 증액된 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이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이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서울특별시경찰청 예규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동안전지킴이”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속)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장이 위촉하며, 지구대(팀)장 또는 파출소장 소속 하에 활동한다.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6,437,920	6,437,920	6,801,221	363,301	6
사무관리비	9,853	9,853	3,912	△5,941	△60
민간경상사업보조	6,428,067	6,428,067	6,797,309	279,242	4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아동안전지킴이 교육훈련 3,244,000원*1식 = 3,244천원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 3,912천원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홍보 6,609,000원*1식 = 6,609천원	- 아동안전지킴이 홍보 1,100원*607개 = 668천원
증감사유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학교 수(607개소) 고려 홍보예산 조정	
민간경상사업보조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6,241,389,000원*1식 = 6,241,389천원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 6,656,848천원
	○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지원 186,678,000원*1식 = 186,678천원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홍보 548,340원*1,214명*10개월 = 6,656,848천원
		○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 140,461천원
		- 겨울용품퍼 등 구매 42,700원*1,214명 = 51,838천원
		- 기타(보험료, 보조사업자 용역비 등) 40,062,000원(보험료)+15,809,000원(인건비)+32,752,000원(기타운용비) = 88,623천원
증감사유		
	○ 최저임금 9,160원('22.)→ 9,620원('23.) 인상 및 학교당 1.97명('22.)→2명('23.) 배치 ※ 아동안전지킴이 1,198명('22)⇒1,214명('23) 운용(총 16명 증원)	

-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아동안전지킴이 현황('22.11) 〉

학교수	중구		종로구		서대문	용산	성북구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은평구	
	중부	남대문	종로	혜화			성북	종암							서부	은평
607	9	3	8	5	19	15	18	11	21	22	23	21	21	22	12	19
1,198	18	6	16	10	38	30	34	22	42	44	46	42	40	44	24	34

강북	금천	중랑	강남구		관악	강서	강동	구로	서초구		양천	송파	노원	도봉
강북	금천	중랑	강남	수서	관악	강서	강동	구로	서초	방배	양천	송파	노원	도봉
14	18	23	8	25	22	36	27	26	16	8	30	40	42	23
26	36	46	16	50	44	70	56	52	32	16	58	80	80	46

※ 자치경찰위원회, 2022.11.9. 별도 제출자료 참조.

○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22.10.7.) “교육청 사업, 자율방범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적정 결과에 따른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는 평생교육국에서 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에는 3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97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학교별 2명 등 1,264명의 학교보안관을 운용하고 있음.

※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 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함(「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참조).

〈 학교별 학교보안관 배치현황 〉

(2022.08월 기준, 단위: 599개교)

	소계	1명 배치 학교	2명 배치 학교	3명 배치 학교		
				소계	40시간	20시간
학교수	599	3	525	71	64	7

※ 농학교, 맹학교, 교남학교는 특수학교로, 학교의 희망으로 1명 배치

※ 1명의 학교보안관 인건비로 오전·오후 2명의 학교보안관을 운영하는 학교는 7개소임

출처 : 평생교육국

- 물론,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아동안전지킴이는 학생들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시간(하교시간 등) 및 장소에 순찰근무를 통해 활동하는바 활동영역을 다르게 하여 아동 등의 안전환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 하지만, 아동안전지킴이도 학교당 배치('22년 학교당 1.97명 배치)되므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서울시) 및 배움터지킴이(서울교육청)의 활동과 중복될 소지는 없는지,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 활동과 다른 차별화된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와 서로 협력·연계를 통한 활동 계획 등 활동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 중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업들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정책 설계를 통한 사업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타.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 동 사업은 '자치경찰·인권 교육 심화과정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하여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 교육 운영 등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1억1천2백만원) 대비 35% 감액된 7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11,800	111,800	72,700	△39,100	△35
사무관리비	106,800	106,800	67,700	△39,100	△3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5,000	0	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교육 콘텐츠 개발 = 35,000천원 - 현장 중심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개발 25,000,000원*1편 = 2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및 인권 교육 콘텐츠 심화과정 개발 = 50,000천원 - 자치경찰 e-러닝 콘텐츠 개발 5,000,000원*5편 = 25,000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러닝 강의 콘텐츠 개발 5,000,000원*2편 = 10,000천원 ○ 자치경찰 인권교육 = 35,000천원 - 현장 중심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개발 25,000,000원*1편 = 25,000천원 - e-러닝 강의 콘텐츠 개발 5,000,000원*2편 = 10,000천원 ○ 자치경찰제도 특강 = 3,000천원 - 강사료 400,000원*2명*2회 = 1,600천원 - 운영 경비(대관료 등) 700,000원*2회 = 1,400천원 ○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 교육 = 15,000천원 - 강사료 400,000원*1명*5회 = 2,000천원 - 운영 경비(대관료 등) 600,000원*5회 = 3,000천원 - 교육책자 제작 10,000,000원 = 10,000천원 ○ 인권 관련 자문회의 운영 200,000원*10명*5회 = 10,000천원 ○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200,000원*5명*5회 = 5,000천원 ○ 제안서평가, 주요 감사 설명회 등 = 3,800천원 - 제안서평가 위원수당 200,000원*7명*2회 = 2,800천원 - 주요 감사 설명회 및 회의 운영 100,000원*10회 =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e-러닝 콘텐츠 개발 5,000,000원*5편 = 25,000천원 ○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현장 교육 = 8,800천원 - 강사료 240,000원*2명*10회 = 4,800천원 - 운영 경비(플래카드, 교육자료 등) 400,000원*10회 = 4,000천원 ○ 인권 관련 자문회의 운영 150,000원*10명*5회 = 7,500천원 ○ 제안서 평가 200,000원*7명*1회 = 1,400천원
	증감사유	
	○ 자치경찰 교육 콘텐츠 개발비 등 기 구축 완료에 따라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감사활동 지원 500,000원*10회 =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감사활동 지원 500,000원*10회 = 5,000천원
	증감사유	
	○ 전년 동일	

- 자치경찰 교육은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市)·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자치경찰사무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44면 참조.

□ 교육 개요

- 대 상 : 서울시 31개 경찰서 자치경찰(경정 이하)
- 기 간 : '22. 5 ~ 12월, 90분 / 회
- 강 사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장 등), 동료 인권 강사
 - ※ 동료 인권 강사 :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강사로 선발된 3명
- 방 법 : 서울시 각 경찰서 별 직장교육 기간 내, 현장 방문하여 교육
 -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를 5개 지역대별로 분류
 - 직장교육 기간 내에 교육 가능한 경찰서 선정 → 현장 방문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인권 관련 교육 실시
- 5대 지역대 내 교육일정

연번	일 정	대상 경찰서
1	'22.5월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종암, 중랑
2	'22.6월	중부, 종로, 남대문 , 용산, 성동, 광진, 혜화
3	'22.7월	강남, 방배, 서초, 수서, 송파, 강동
4	'22.10월	중부 , 종로, 남대문, 용산, 성동, 광진, 혜화
5	'22.11월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
6	'22.12월	중부, 종로 , 남대문, 용산, 성동, 광진, 혜화

※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시 비대면 교육 실시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교육은 31개 경찰서 중 10월 현재까지 3개 경찰서만 실시하였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4천명에 이르는데, 280명 정도만 교육을 받아, 교육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의 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별도제출자료 참조.

□ '22년 자치경찰위원회 직무교육 결과

연번	교육 구분	교육과정	주관 부서	분야	교육 일자 (장소)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	평가 자료
1	집합 교육	제1회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자치경찰 지원과	자치경찰, 인권	'22.5.25. (중랑 경찰서)	중랑경찰서 자치경찰관	150명	- 자치경찰제 도입과정, 사무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주요 추진사업 등 - 인권 개념, 인권 보호의 의무주체로서 경찰 활동, 법령상 인권 관련 규정 등	별도 평가 미실시
2	집합 교육	제2회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자치경찰 지원과	자치경찰, 인권	'22.6.15. (남대문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자치경찰관	30명	-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구성, 주요 추진사업 등 - 인권 개념, 인권 보호의 의무주체로서 경찰 활동, 헌법상 기본권 등	상동
3	집합 교육	제3회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자치경찰 지원과	자치경찰, 인권	'22.7.7. (강동 경찰서)	강동경찰서 자치경찰관	104명	-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구성, 주요 업무 등 - 인권 개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인권 보호의 의무주체로서 경찰 활동 등	상동

파.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신규)

- 동 사업은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을 신규로 구매하여 사고위험 예방 및 신속한 신고출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후 순찰청(소형)을 교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순찰정 구입 = 300,000천원
		- 순찰정(소형) 신규 구매 300,000,000원 * 1정 = 300,000천원
	증감사유	
	○ 노후된 순찰정 신규구매를 위한 증액	

- 순찰정은 인명구조 핵심장비로 노후된 순찰정 교체(소형 1.5톤 4인승, 1대)를 통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실종자 수색 등 한강공원에서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한강순찰대는 순찰정을 중형선 4정, 소형선 3정 등 현재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정을 이용한 112신고출동건수는 최근 3년간(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평균 3,400여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한강경찰대 순찰정 이용한 인명구조현황 〉

연도	합계	112신고출동				기 타 업 무				
		소계	구 조 (명)	변사체 인양(명)	기타	소계	잠수	선박 인양	단속	민원
2020년	3,354	3,170	83	119	2,968	184	12	7	2	163
2021년	4,008	3,728	73	101	3,554	280	71	7	6	196
2022년 10월말기준	3,413	3,175	37	101	3,037	238	46	2	1	189

- 그러나, 중형선과 소형선 모두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고, 한강순찰대는 순찰정 노후화로 인해 운행 중 시동꺼짐, 엔진과열, 누수 등 고장이 빈번하고 그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 한강경찰대 순찰정 종류

		
중형순찰정 (250마력엔진×2개=500마력)	소형순찰정 (140·150마력)	수상오토바이
8인승으로 안정성이 좋아 인명구조·변사인양 등 업무 시 다수인원·장비 탑재 가능하여 주력선으로 사용	광나루 등 저수심 지역 신고출동 임무수행, 주력선인 중형순찰정의 예비선으로 사용	둔치 인접 등 저수심 지역에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변사 인양 시 활용 필요

〈 한강경찰대 순찰정 보유 현황 〉

항목	중형 순찰정 (알루미늄선)				소형 순찰정 (FRP선)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길이(미터)	9.2	9.4	9.4	9.2	5.6	6.5	6.0
무게(톤)	3.5				1.5		
운항시간 (’22.5.18.기준)	좌 4,020 우 4,050	좌 410 우 410	좌 3,750 우 3,767	좌 4,350 우 4,355	265	50 (운항계고장, 실제4,010)	502 (운항계고장, 실제3,000)
속도(노트)	74km (40)				74km (40)		
탑승인원	8				4		
선체연식	’13.12.17 (만8년↑)	’11.12.23 (만10년↑)	’11.12.23 (만10년↑)	’13.12.17 (만8년↑)	’06.07.07 (만15년↑)	’11.12.26 (만10년↑)	’08.12.29 (만13년↑)

※ 자치경찰위원회, 2022.11.9. 별도 제출자료 참조.

- 동 사업은 한강경찰대 모든 순찰정이 내구연한⁶⁾으로 규정된 7~8년을 초과하는 노후 장비이나 고가장비 교체에 따른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노후화된 소형 순찰정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 하지만, 한강경찰대는 소형선은 가용공간이 좁고, 전복위험이 높아 예비선으로 부적합하므로 중형선으로 교체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소형선의 경우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실제 시민 구조 작업시 공간 활용이 어려우므로 중형선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소형 순찰정은 4인승으로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근무자 3명이 시민 1명을 구조할 시 구조 전후 잠수복·공기통·오리발·밧줄 등 구조(잠수) 장비 탈착시 공간 활용이 매우 어렵고, 악천후나 강풍시 소형선은 규모가 작아 전복위험이 높고 실제 구조활동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이 있다고 함.

6)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및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별표 1(내용연수표) 참조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217	25111527	소형보트	7년
220	25111603	구조선	8년

-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장비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